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58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임호선 · 임미애 · 이상식
윤준병 · 이원택 · 문대림
정태호 · 이재강 · 장종태
문금주 · 강준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 운영 품목과 미운영 품목 간 재해 대응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보험 미운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실질적인 재해보장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제도명을 “농업재해공제”으로 하고, 목적·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 공통 적용 조항에 본 제도를 추가함(안 제1조 등)
- 나. 제도 운영을 위한 농업재해공제, 공제가입금액, 공제부담금, 공제금을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 다. 재해공제의 종류를 농작물재해공제, 임산물재해공제로 정하고(안 제20조), 공제목적물을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로 정함(안 제21조).
- 라.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정하고(안 제24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모집, 손해평가 등 일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마. 공제부담금은 재해공제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 바. 공제금 지급에 대한 분장을 조정하는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
- 사. 공제가입자 등의 의무(안 제32조)와 공제가입자 등을 보호하도록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 33조).
- 아.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부담금 등을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안 제34조), 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부족금과 관련하여 재보험기금을 사용하도록 정함(안 제37조, 안 제38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공제”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6호) 중 “한다)”를 “한다) 및 농업재해공제사업(이하 “재해공제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6. “농업재해공제(共濟)”란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공제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7. “공제가입금액”이란 농업재해공제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공제가입자와 운영기관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8. “공제부담금”이란 공제가입자와 운영기관 간에 약정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운영기관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공제금”이란 공제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

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가입자와 운영기관 간의 약정에 따라 운영기관이 공제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한다) 및 농업재해공제(이하 “재해공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재해보험사업 및 재해공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재해보험”을 각각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재해보험사업 및 재해공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보험”을 각각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 및”을 “재해보험, 재해공제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해보험”을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재해보험사업 및 재해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재해보험 및”을 “재해보험, 재해공제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재해보험 및”을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공제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보험”을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재해보험이나”를 “재해보험, 재해공제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보험을”을 “재해보험 또는 재해공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재해보험”을 “농업재해보험 및 재해공제”로 한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를 제4장부터 제6장까지로 한다.

제3장을 신설하고 제목을 “재해공제사업”으로 하고,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해공제의 종류 등) ① 농업재해공제의 종류는 농작물재해공제, 임산물재해공제로 한다.

② 농업재해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산물재해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공제목적물) ① 공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공제의 효용성 및 공제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공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2. 임산물재해공제: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② 정부는 공제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의 범위 등) 재해공제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공제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제가입자) ① 재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해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공제운영기관과 공

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재해공제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제운영기관) 재해공제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공제부담금) 재해공제의 공제부담금은 재해공제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제운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6조(손해평가 등) 재해공제의 손해평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8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제운영기관”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공제”로, “보험가액”은 “공제가액”, “보험가입자”는 “공제가입자”로 한다.

제27조(공제금수급계좌 등) 공제금수급계좌, 수급권의 보호, 공제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1조의7, 제12조, 제1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제운영기관”으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재해보험”은 “재해공제”로, “보험목적물”은 “공제목적물”로, “재해보험가입자”는 “재해공제가입자”로, “재해보험계약”은 “재해공제계약”으로 한다.

제28조(업무위탁) 공제운영기관은 재해공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집, 피해 접수, 공제금 지급, 손해평가 등

재해공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회계 구분) 공제운영기관은 재해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분쟁조정) 공제운영기관은 재해공제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해 공제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① 공제가입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제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제운영기관을 기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제운영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지급된 공제금에 대하여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환수 절차 및 가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제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공제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공제계약자 등의 보호) ① 공제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사고 조사를 이유로 공제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제운영기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시부터 공제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제운영기관은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공제운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공제운영기관이 공제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공제금이 총 공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33조의 재보험기금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중전의 제3장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4장제34조부터 제39조로 한다.

제36조(중전의 제22조) 제1항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

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해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37조(중전의 제2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공제사업에서 공제부담금 총액을 초과하는 공제금의 지급
중전의 제4장제25조의2부터 제29조의2까지를 각각 제5장제40조부터 제46조로 한다.

제40조(중전의 제25조의2)의 제목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사업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재해보험사업 및 재해공제사업”으로 한다.

3. 재해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제41조(중전의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상품”을 “보험상품 및 공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험확대”를 “보험 및 공제 확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보험사업”을 “재해보험사업 및 공제사업”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재해보험·재해공제 제도”로 한다.

1. 보험 및 공제 대상의 현황

제42조(중전의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공제운영기관은 신규 공제상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43조(중전의 제28조)의 제목“(보험가입의 촉진 등)”을“(가입의 촉진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을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로, “보험가입자”를 “보험 및 공제 가입자”로 한다.

제44조(중전의 제28조의2)의 제목“(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을“(가입촉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보험 및 공제 가입촉진계획”으로 한다.

② 재해공제운영기관은 농업재해공제 가입 촉진을 위하여 공제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전의 제5장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6장제47조부터 제49조로 한다.

제47조(중전의 제30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를 “제15조, 제31조”로 한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u>농어업재해보험</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 ----- <u>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공제</u>----- ----- ----- -----.</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농업재해공제(共濟)”란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공제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u></p> <p>7. <u>“공제가입금액”이란 농업재해공제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공제가입자와 운영기관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u></p>

<신 설>

<신 설>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

8. “공제부담금”이란 공제가입자와 운영기관 간에 약정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운영기관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공제금”이란 공제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가입자와 운영기관 간의 약정에 따라 운영기관이 공제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
-- 한다) 및 농업재해공제사업(이하 “재해공제사업”이라 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

-----한다) 및 농업재해공제(이하 “재해공제”라

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다)-----

② -----

1. 재해보험사업 및 재해공제-----

2.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3.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4. 재해보험사업 및 재해공제사업-----

5. -----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4. (생략)

②·③ (생략)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공제 및 -

-----.

1. (현행과 같음)
2.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

3.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2. ----- 재해보험 또는 재해공제를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원

3.·4. (생략)

⑤·⑥ (생략)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생략)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신설>

--

3.·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농업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

-----.

⑧ (현행과 같음)

제3장 재해공제사업

제20조(재해공제의 종류 등) ①

농업재해공제의 종류는 농작물 재해공제, 임산물재해공제로 한다.

② 농업재해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산물재해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

<신 설>

입할 수 있다.

제21조(공제목적물) ① 공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공제의 효용성 및 공제 실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공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2. 임산물재해공제: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② 정부는 공제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보상의 범위 등) 재해공제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공제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공제가입자) ① 재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가

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해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공제운영기관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재해공제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공제운영기관) 재해공제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 설>

제25조(공제부담금) 재해공제의 공제부담금은 재해공제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제운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설>

제26조(손해평가 등) 재해공제의 손해평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8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제운영기관”

<신 설>

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공제”로, “보험가액”은 “공제가액”, “보험가입자”는 “공제가입자”로 한다.

제27조(공제금수급계좌 등) 공제금수급계좌, 수급권의 보호, 공제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1조의7, 제12조, 제1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제운영기관”으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재해보험”은 “재해공제”로, “보험목적물”은 “공제목적물”로, “재해보험가입자”는 “재해공제가입자”로, “재해보험계약”은 “재해공제계약”으로 한다.

<신 설>

제28조(업무위탁) 공제운영기관은 재해공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집, 피해 접수, 공제금 지급, 손해평가 등 재해공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회계 구분) 공제운영기관

<신 설>

은 재해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분쟁조정) 공제운영기관은 재해공제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해 공제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① 공제가입자, 공제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제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제운영기관을 기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제운영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지급된 공제금에 대하여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환수 절차 및 가산금 등에

<신 설>

<신 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제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공제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공제계약자 등의 보호) ①

공제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사고 조사를 이유로 공제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제운영기관은 공제계약의 체결 시부터 공제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제운영기관은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

의 범위에서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 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운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공제운영기관이 공제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공제금이 총 공제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33조의 재보험기금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20조 · 제21조 (생략)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제34조 · 제35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36조(기금의 조성) ① -----

다.

1. ~ 6.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24조·제25조 (생략)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신설>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7. 재해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기금의 용도)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해공제사업에서 공제부담금 총액을 초과하는 공제금의 지급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8조·제39조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제4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제5장 보험 및 공제 사업의 관리

제40조(사업의 관리) ① -----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 략)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5.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3. (생 략)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생 략)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

3. 재해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
-- 재해보험·재해공제 ---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

1. ----- 제6호-----
--

2.·3. (현행과 같음)

4. ----- 재해보험사업 및 재해공제사업-----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 보험상품 및 공제 -----

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보험대상의 현황

2.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3. ~ 5. (생략)

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7조(시범사업)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

1. 보험 및 공제 대상의 현황

2. 보험 및 공제 확대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재해보험사업 및 공제사업 ----- 재해보험·재해공제 제도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시범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해공제운영기관은 신규 공제상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생략)
<신설>

②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9조의2 (생략)

제5장 벌칙
<신설>

제30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가입의 촉진 등) -----

 -----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

 ----- 보험 및 공제 가입자 -----

 -----.

제44조(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해공제운영기관은 농업재해공제 가입 촉진을 위하여 공제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및 공제 가입촉진계획 -----

 -----.

제45조·제46조 (현행 제29조 및 제29조의2와 같음)

<삭제>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p>1. ~ 4. (생략) <u><신설></u></p> <p>③ <u>제15조</u>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제31조</u> · <u>제32조</u>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u></p> <p>③ <u>제15조, 제31조</u>----- ----- -----.</p> <p><u>제48조</u> · <u>제49조</u> (현행 제31조 및 제32조와 같음)</p>
---	--